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 확대 및 자살예방시설물 설치 등〉

■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35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목적,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3
2.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7
3.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10

I. 개요

1.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9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11. 27.
- (3) 회 부 일 : 2024. 11. 28.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군·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라. 시·군·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목적,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 실현
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을 강화하며, 연
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
조,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조성하며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u> -----.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 13. (생략) <신설> 14. (생략)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u> 2. ~ 13. (현행과 같음) 14. <u>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u>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시·도지사</u>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 예방시행계획(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시·도지사</u>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시·도지사, 시·군·구청장</u>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포함시키고, 5년마다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으로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환경의 조성 과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며, 시·군·구청장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자구에 대하여는, 자살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지가 불명확한바 유명인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때에 자살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의도하는 것임을 뚜렷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서 이미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억제 혹은 방지의 대상인 자살유발정보²⁾에 대하여는 ‘관리’라는 용어보다는 ‘억제’ 또는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같은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한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³⁾도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개정안에서는 ‘시·군·구청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6)등 유사 입법례가 다수 있는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살위험자⁷⁾ 등에 밀착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에 없었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설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리고 개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는 체계인데,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치매관리법」 8)등

4) 「지역보건법」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8) 「치매관리법」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및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 은 자살예방센터를 <u>설치·운영할 수 있다.</u> 1. 2. (생략) 3. 자살시도자 <u>사후관리</u> 4. ~ 7.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 ----- ----- <u>시장·군수·구청장</u> -----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3. ----- <u>사후관리 및 자살위험자 사례관리</u>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 자살예방센터는 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살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 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기준 전국 25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시·도별 자살예방센터 설치현황 >

(’24년 12월 기준)

지역		자살예방센터 ¹⁾			정신건강복지센터(팀) ²⁾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기초
합계	255	55	13	42	200	4	196
서울	26	2	1	1	24	0	24
부산	17	2	1	1	15	0	15
대구	10	1	1	0	9	0	9
인천	12	4	1	3	8	0	8
광주	6	1	1	0	5	0	5
대전	6	1	1	0	5	0	5
울산	6	1	1	0	5	0	5
세종	2	0	0	0	2	1	1
경기	32	32	1	31	0	0	0
강원	19	5	1	4	14	0	14
충북	15	0	0	0	15	1	14
충남	17	3	1	2	14	0	14
전북	15	0	0	0	15	1	14
전남	23	0	0	0	23	1	22
경북	25	1	1	0	24	0	24
경남	21	1	1	0	20	0	20
제주	3	1	1	0	2	0	2

1) 독립형 6개소, 부설형 49개소, 2)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 배치

*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의 자살예방센터는 2023년 기준 등록된 3만 1천명의 자살고위험군에 대하여 총 88만 건의 자살상담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5년

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자살고위험군 등록인원과 자살상담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 시·도별 자살고위험군 관리 인원 및 상담 건수 >

구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					자살상담 건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1,280	24,992	28,562	27,053	31,739	555,516	697,696	788,581	789,646	880,413
서울	3,688	1,768	2,456	2,427	3,304	111,884	59,378	65,379	66,085	87,528
부산	805	1,357	1,619	1,627	2,095	26,272	45,501	49,613	60,677	71,548
대구	467	595	824	918	1,315	19,814	21,236	31,103	35,330	45,077
인천	1,182	1,549	1,804	1,935	2,396	58,275	87,931	94,186	91,703	94,181
광주	356	624	719	684	832	11,095	17,574	18,126	17,966	21,066
대전	77	284	394	504	648	6,422	10,618	14,637	15,326	14,579
울산	257	325	395	385	613	7,949	10,071	12,542	13,202	15,833
세종	58	52	57	66	113	682	730	1,157	1,102	1,498
경기	7,299	8,742	9,618	8,410	8,906	179,597	238,605	277,364	282,897	277,198
강원	2,350	2,685	2,681	2,136	2,300	41,630	61,584	64,260	61,324	65,933
충북	1,348	1,625	1,673	1,591	1,798	21,806	31,539	32,366	33,427	41,231
충남	793	1,471	2,127	1,991	2,113	7,418	18,142	22,442	25,455	26,132
전북	535	798	862	974	1,001	18,920	27,975	29,951	29,295	32,693
전남	176	370	474	484	770	7,305	8,789	12,125	11,872	14,596
경북	792	1,059	1,028	1,185	1,570	13,508	18,313	20,901	23,349	28,552
경남	660	1,130	1,249	1,201	1,636	14,684	27,682	29,513	27,888	32,986
제주	437	558	582	535	329	8,255	12,028	12,916	6,975	9,782

* 출처: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고 있는 자살예방센터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지방자치단체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에 자살고위험군에게 자살상담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 지역의 등장 및 사업 수요도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여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배치나 사업예산 배분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그 설치·운영을 복수의 시·군·구가 병합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 개정안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살빈발장소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4조의2(자살예방시설물의 설치)</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 공공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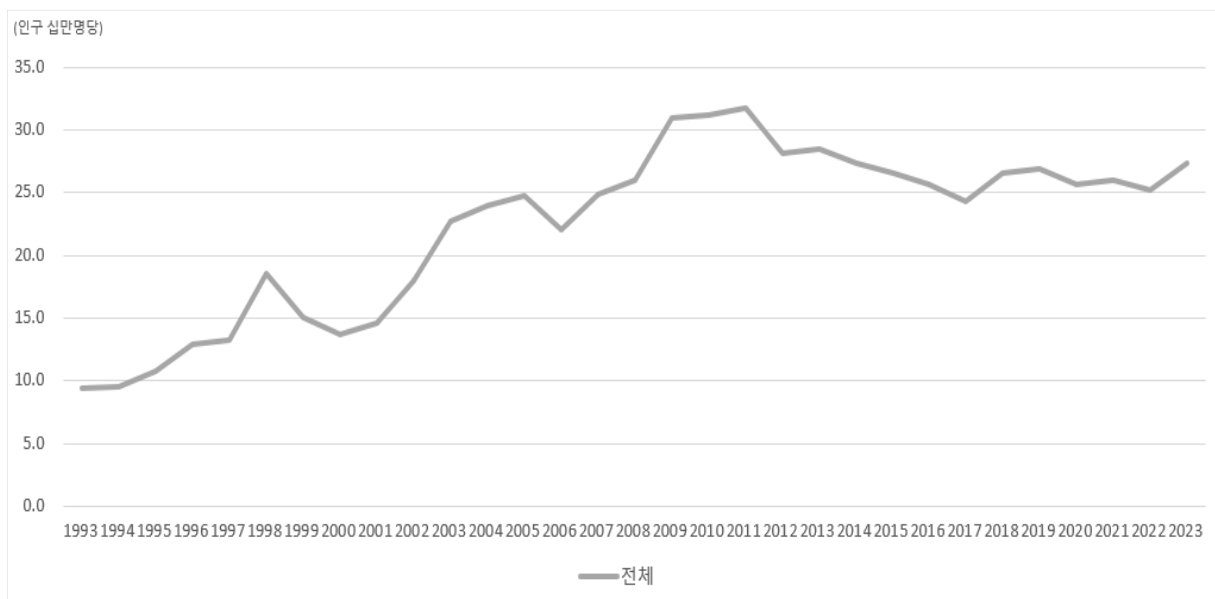
방자치단체는 자살빈발장소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노력 의무는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데에서 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1년 31.7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23년 기준 27.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자살률=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¹⁰⁾*100,000

□ 다만, 자살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시설·장소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조치는 자칫 자살예방이라는 입법목적과 달리 자살고위험군 등의 사람에게는 충동적인 정보로서 자극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¹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하여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할 뿐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과 긴급구조활동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년~2027년)의 내용으로서 2022년 기준 25.2명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기 위하여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다(多)빈도 장소 관리강화를 위하여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자살 다빈도 장소 분석 후 그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매년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유사한 입법취지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10)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말자료와 금년말자료의 산술평균을 의미함

11) 실제로 2021년 7월 서해안의 어느 대형 교량에서 일어난 자살관련 보도가 있는 후, 같은 장소에서 3달 동안 6명이 투신한 사건에 대하여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바 있음.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19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사무로 보아야 하고, 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재 자살예방 관련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행 중인 업무로서, 이에 추가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서비스 중복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경기도 시흥시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를 토대로 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기도 화성시	○자살빈발장소의 지정과 자살예방시설물의 설치에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큰 이슈로서 당위성 부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498